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52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4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0년 7월 13일, 서윤기 의원 외 42명

나. 회부일자: 2020년 7월 14일

다. 상정일자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0년 9월 4일 상정·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서윤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(안 제34조제6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 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,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〈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〉

연번	인권영향평가 항목	개정 권고 조항	권고사유
6	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	20	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

- 이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구제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.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가 부과·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다만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면 관련 용어를 “이의신청”이 아니라 “이의제기”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임.

- 한편, 서울시는 현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, 의견제시에 관한 내용과 기간도 동시에 통보하고 있음.

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4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으나, 이 중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전무한 상황이며, 그 이유는 위반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있기 때문임.

〈과태료 부과건수 및 이의신청 현황〉

과태료명	구분	2018	2019	2020.6	비고
환경영향평가 조례위반과태료	과태료(건)	7	5	2	위반내용 확인 후 과태료 부과로 이의신청 제기 사례 없음
	이의신청(건)	-	-	-	

〈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〉

구분	1차 위반 과태료		
	100만원	300만원	500만원
부과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초자료 보존의무 불이행 · 관리대장 비치 의무 불이행 등 · 사후영향조사결과 미통보 · 사업의 착공.준공.중지 통보 미이행 · 사업자 변경 시 승계 받은 협의내용 및 이해상황 등 통보 의무 미이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평가서 거짓작성 · 평가절차 누락 후 공사진행 · 공사와 평가서 작성 업무 분리 계약 의무 불이행 · 평가서 등과 그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 · 사후관영영향조사 미실시(일부) · 협의내용 조치명령에 대한 불응 · 협의절차 완료 이전 공사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후관영영향조사 미실시(전부) ·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조치 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· 협의내용 이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린 공사중지 등의 조치요구에 불응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수정해야 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52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4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함(안 제34조제6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4조제6항 중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4조(과태료) 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 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34조(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34조(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) ① ~ 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제목 “(과태료)”를 “(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4조(과태료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34조(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<u>이의제기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